

[ ]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 
[ ] 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
			10일
신고인	상호(명칭)	등록번호	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
	주소	(전화번호: )	
지위승계 신고사항	승계한 영업의 상호(명칭)	승계한 영업의 등록번호	
	승계한 사무실 소재지	(전화번호: )	
	승계한 실험실 소재지	(전화번호: )	
	지위승계 사유		
	지위승계 일자		

「하수도법」 제19조의6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8제1항 제14조의7제1항  
공공기관 관리대행업자 [ ] 기술진단전문기관 [ ] 의 지위승계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유역(지방)환경청장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1. 상속의 경우: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관리대행업 등록증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각 1부 2. 영업을 양수한 경우: 양도·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·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및 관리대행업 등록증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각 1부 3. 합병의 경우: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관리대행업 등록증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각 1부 ※ 증명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생년월일만 표기합니다.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\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